

파이칩스 분쟁광물정책

문서번호. : PD_20201215-01

분쟁광물이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 또는 그 인접국가 등에서 채굴/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의 전쟁자금으로 유입되어 지속적인 분쟁을 초래하고, 더불어 채굴과정에서 아동 노동, 성폭력, 기아 등 인권이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의 규제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내 1502조)을 제정하였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상장된 기업은 매년 분쟁광물 사용 실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파이칩스는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을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3TG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하고,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 조사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책임 있는 광물 보증 프로세스(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 및 사용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웹사이트에서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의 인증을 받은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칩스는 협력사에게 미국 및 유럽의 분쟁광물 관련 법규 및 당사의 분쟁광물 정책을 충분히 숙지 및 준수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해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파이칩스에 납품하는 제품에 DRC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사슬망 내 분쟁광물을 취급하는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파악 및 식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을 작성하여 파이칩스에게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식별된 위험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파이칩스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제공한 정보와 다른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망 내 식별된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파이칩스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칩스는 분쟁 없는 공급망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DRC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